#  서욜중영지겹 굥안1부 

## ㅁ 사건 게요

○ 피고인 ：유우성（32세），서울시청 계약직공무원（在北華僑）
O 공소사실 요지（국가보안법위반 부분）
－2006．6．～2012．10．회령보위부의 탈뷱자 정보수집 지령 수수，침투 2회（콕수잠입）
－2006．8．～2012．1．회령보위부에 노트븍 등 제공 2 회（면의제강）
－2007．8．～2012．1．밀입뷱 3회（탈출，푹수탄춥）
－2011．2．～2012．7．탈복자 신원정보를 수집，여등생 유가려를 똥해 회령보위부에 전달（간쳡，회합퐁신） 3 회 둥

## ㅁ 주요 경굑

○ 2013．2．26．구속기소（국정원 송치）
O 2013．3．4．중인 유가려（피고인 여동생）증거보전 실시
O 2013．8．22．국가보안법위반 부분 무죄 선고
＊여켠법위반 부분 동으 징역 1변 집행유예 2년 선교
O 2013．10．2．항소심 1회 기일
－항소요지 진술 및 입중계획 게출
O 2013．11．1．항소심 2회 기일
－검찰，화룡시 공안국 발급의 피고인 출입경기록 제출
O 2013．12．6．항소심 3회 기일
－변호인，연변주 공안국 발급의 피고인 출입경기로，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 제출

O 2013. 12. 20. 항소심 4회 기일

- 변호인, 기존 제출된 출입경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 검찰에서도 추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채택

O 2014. 2. 28. 항소심 5회 기일 진행 예정

## ㅁ 출임경 기독 굘련 진상

○ 검토 비경

- 중국에서 사실조회 회신내웅에 따라 언론보도 및 민변 기자회견 2014. 2. 14.자 뉴스타파 둥 언론보도
- 2014. 2. 13.자 중화인민공화국 주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명의의 사실 조회는 변호인측에서 제츨한 문서 2건은 합법젹인 정식 서류이고, 검사 충에서 제출한 문서 3 건온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 언돈보도에 따리 법훤에 사신조회 회신 도학 여부 잋 변호인 공개 여부 학인
$\rightarrow$ 범인온 2. 14. 오후에 사실조회 답변 자둥이 도학하였고, 변흐인축에서 범원에 서실조회 내용에 대하여 운의하였으 바 발훤에서든 연본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새본이므로 기 내용 동율 일려줄 수 ㅇㅄㅄ다고 답뿨
$\rightarrow$ 밥원은 검줄충에도 사실조희 답변 사본을 제츌함 수 없다면서 다만 언튼보도 등을 감안하여 판사실에 와서 사본 내용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여 검사가 딴사실에 가서 직접 화인한바, 언룬보도 내용과 사실조회 답변 사본 내용이 동일항을 혁인 / 사실조회 답변 원본은 2. 17. 도작예점 O 출입경기록(화몽시 공안국 출입국련리격 발근, 2013. 9. 26.) 확보 경위 및 진위 1. 입수경위
(1) 공소사실 입중의 주요 중거인 유가려의 수사기간 및 중거보전절차 진술에 대해 1심이 그 신빙성율 배척하였으므로, 유가려의 진슐율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중거가 필요
(2) 수사 당시 국정원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은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을 검사에게 제시[2006.5.27. 북 중(입경), 2006. 6. 10. 북 궁(입경) 기룩] 한 바 있으나, 국정원은 협조자 보호를 위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
* 수사 당시 검사에게 제시된 촐임경 기뽁은 2006. 5. 27. 자 입경 기륵 이후 바로 2006. 6. 10.자 입경 기륵이 학인되는데(事 2 회), 이후 국정원이 제공한 화롱시 공안국 발급 촐입경기록에는 2006. 5. 27.자에 입경과 출경과 각 1회씩 있고 2006. 6. 10.자 입경 기록이 있ㅇ((⿱ㅗ 3회) 그 내용에 차이가 있 었으여, ㄱ 문서 형식도 상이하였음(구속영장 정구시 수사기록에 포항)
$\Rightarrow$ 피고인의 위 출입경 기록과 유가려의 진숱(뷱한에서 어머니 장혜식을 마치고 2006. 5. 하순경 중국으로 뗘난 피고인이 다시 도강을 하여 뷱한으로 들어왔고, 보위부에 젹발되어 공작원 인입 후에는 통향증으로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휘지)이 부합
* 위 출입경기록은 국정원 수사든계에서 피고인에게 제시된 것으로 보이나, 빌조자 보호 찻원에서 위 출임경기독의 존재는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 요청 에도 콜구하고 검잘에서는 혀인해 주지 앖았응
(3) 겸찰과 국정원은 1 심 당시부터 법정 제출이 가능한 츱입경 기톡율 확보하기로 하였고 중앙지검은 2013.6. 대검욜 퉁해 심양 한국영사광에 피고인의 중국-븍한간 츨압경기톡을 입수헤 쥴 것을 국제수사공조 방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중국츅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였옴
(4) 국정원은 화푱시 퐁안국 내부 협조자로부터 받은 자료라면서 2013. 10. 중순경 피고인의 츨입경 기록욜 검찰에 전달하였고, 검찰은 위 출입경기록율 2013. 11. 1. 법원에 증거로 게츨
$\Rightarrow$ 위 출입경 기록상 피고인은 '2006. 5. 27.11:16 츨경(입북)'으로 기재 $\Rightarrow$ 국정원은 당시 출입경 기론의 신빙성율 확보하기 위해, 간인만 끽힌 출입경 기록 외에 공중인이 찍힌 출입경 기록까지 함께 제출
(5) 변호인측은 출입경기록에 대헤 중거부동의 후 입수경위 및 공문 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입수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
(6) 검찰은 외교부-심양영사관을 봉해 화룽시 공안국에 위 출입경기 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고 2013. 11. 27. 심양영사관-외교부를 퉁해 위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화롱시 공안국의 회신(공문)올 받아 12. 6. 법원에 제출하였옴
* 이러한 회신이 가능하다는 것도 국정원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음
(7) 12. 6. 변호인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명의' 피고인의 춥입경기록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륨과 다른 기재 부분을 지적하고,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중국에서 촬영한 동영상올 법정에서 상영
$\Rightarrow$ 위 출입경 기록상 피고인은 '2006. 5. 27.11:16 입경(입중)'으로 기재
$\Rightarrow$ 변호인의 등영싱(안경형 몰래가메라로 찰영)에는 하통시 공안국 실무자 등이 겁찰이 제츌한 서류를 보면서 화롱시 공안국은 그러한 궁문올 발급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공문을 발급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하는 내용
$\Rightarrow$ 변호인은 또한 화옹시 공안국에는 출입국관리'대대'가 있울 분 검찰 제츌 출입경기룍의 발급 부서인 츨입국관리'과'는 폐지된 직제라는 취지도 함께 주장
$\Rightarrow$ 변호인은 피고인이 3 희 연속 입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륨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피고인의 5. 27. 11:16입경, 2006. 6, 10, 15:17 입경 부분은 입경 자체가 존재하지 핞옴에도 전산오류로 생성되어 있다는 취지)라는 취지로 주장
* 검찰은 위 3회 입경 부분 중 '2006. 5. 27.11:16 입경(입중)' ${ }^{\prime}$ 은 '츨경의 오기'라는 훠지로 대응
(8) 검찰은 국정원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여 대웅방안의 강구블 요구, 국정원은 변호인 제출 정향설명서의 발급기관과 동일한, 삼합변방 검사참 명의의 답변서(위 '정황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를 확보하여 검찰에 인계(심양영사관 이인철 영사 발급의 영사중명을 함께 제공)하였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제출


## 2. 국정원 제즐 '출입경기륵조회' 문서의 신빔성 확인

(1) 출입경 기록을 화룽시 공안국 내부 쳡조자로부터 받았다는 국정원의 설명, 출입경 기록에 날인된 관인 및 공중인에 비추어 해당 출입경 기톡이 중국 공무원에 의해 발급된 것임율 인정할 수 있었옴
(2) 출입경 기록의 신빙성 보강을 위해 대검이 외교부-심양영사간을 경유하여 화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위 츨입경기복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공문율 확보

* 정식 공운 수뷸신옵 통해 진외를 왁인한 것이므로 국정원 제출 '촐입겸 기록조회'의 가장 중요한 진위 햑인 근거
(3) 변호인 제츨 겅황설명서의 발급기관과 동일한, 삼합변방검사참의 관인이 날인된 답변서에, 변호인이 게출한 정황설명서는 결재 었이 발급된 문서이며, 피고인의 입츨경 니여에서 '입'과 '출'이 바뀌었올 가능성이 늎다는 취지의 기제 내용 확인

3. 변호인 주장에 매한 반튼
(1)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정보협령올 룽헤 게강받은 것으로서 하통시 굥안국읙 일반실무자들은 위 츨입경기록의 제공 여부에 대해 알지 무天하므로 변호인이 게츨한 동영상의 화콩시 공안국 실무자들의 발언 내옹은 신빙하기 어려움(활영 역시 허가를 드한 것이 아닙)
(2) 중국 출입국관리시스템이 업데이트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회 및 추젹 시스템올 구축한 것으로 출입경 데이터 베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데이트 과정에서 새로운 입경 기로이 생 성될 가능성은 없음
(3)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해당기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변호인 제출 '정황셜명'욜 제공한 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 그 신빙성이 높옴
－위와 같이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룩조회’ 서류는 유가려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화룽시 공안국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심양 영사관올 경유하여 화롱시 공안국으로부터 위 출입경기룩을 발급한 사실이 있옴율 재확인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만단하여 법원에 제출
－다만 주대한민국 중국영사간에서 공식젹으로 사실조회 회신으로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위조라고 판단한 근거 및 사실조회 발급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할 삘요
＊기타 정왕 ：변개된 자료임올 앝면서 제공하였을 가능성 여부
－국정원온 화옹시 공안국 발근 출입경 기록욜 제공하기 전，변호인 제출 자료와 감이 입경이 3 희 연속된 기륵（간인 잋 발급처 기재 없음）은 영사밴인서 겅부문서 항태로 겋사에게 제시하였으나．중거능력 휘득 가능성이 낮다는 검사의 명가에 따라 회수
 하였다는 회지）과 달리 입경－춘경－입경이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을 화인 하고 그 대행욜 겁사에게 문의하여，비롱 기존 공소사실과 다르디교 하여도 완보한 기록 그대로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을 겁토히가로 견정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국정원의 의도적 변개 도든 변개된 자료잉울 인식하고 제공 하였욜 가능성은 상정키 어러움

기존 공소사살교 배차되는 내용으로 종거를 위조함 이유 없음
므몁할 대혁

－공식 절차를 퉁한 출입경기록 재확보 추진
．현재 길림성에서 관할 연변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올 인중하는 절차를 진행 중（⿱⿱⿲㇒丨丶㇒⿴囗⿱一一寸首 출입경 기록율 발급할 수 었어 길림성 관할 연변주 공안국이 발급）이고， 2 ． 20 ．경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에상
＊중국 현지에서 국정원이 진행 중이며，길림성으로부터 촐입경 기톡의 진위에 대한 인중 및 외국에 제공외는 신빙성 있는 운서흘 담보하기 위한 인중올 모두 밀하여 제공받올 계획임
.사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헤당 출입경 기록은 변호인 제출 기루ํ과 마찬가지로 최종 3 회의 기록이 모두 입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서의 주(注)로 2006. 5. 27. 두 번째 입경이 실제로는 출경(입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음
.위 자료를 제출하여, 화륭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의 내용이 피고인의 실제 츨입경 경위와 부합된다는 점을 입중하여 위조 의혹 해소 예정

- 검찰 및 변호인의 사실조회 요청 항목은 18 개 항목에 이르나 중국축의 사실조회 회신은 문서위조 여부에 대한 부분만 있으므로 중국의 문서 발급절차 및 본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추가 사실조회 신청 또는 기존 사실조회 신청 내용에 데한 추가 답변 요구 검토 O 언론 대쳑
- 2014. 2. 14. $22: 10 \sim 23: 10$ 브리핑(2차장겸사)
* 브리밍 당시 주요 추가 질의
(1) 이이 중국당국이 위조되었다고 굥식 답변을 회신한 이상 위조 여푸에 대한 추가 확인이 어떠한 방번으로 가능함 것인자
(2) 위조 여부에 매한 의흑은 이미 1담ㅇㅇ 전후티 변호인에 의해 지기되었 는데 그간 진와에 매안 혁인욜 하지 이니한 것인지
(3) 문건 한보 과정에서 영사관의 관여 정도
(4) 븐전의 친상을 어따한 방법으로 규명암 것인지(수사팀이 확인, 볌도의 팀을 구성. 별도 팀을 구성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5) 국정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쳬적 경위를 화인하였는지
- 향후 문서들의 출처 및 발급경위 등 진상 확인하여 이를 주시 공표예정


## O 유관기권간 대쳑

- 국정원
.국정원 제출 문서들에 대한 문서 츨처 및 실제 닽당자들 확인하여 간련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현재 진행 중인 '길림성 인중 출입경기록'의 조소한 확보 독혀
.본건 사실조회 회신이 주한 중국대사관이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 요청
- 외교부
.심양영사관 발급 공문들의 진위 여부 확인
.정황설명에 관한 답변서와 관련된 ‘영사확인서’ 작성 경위 확인
.본건 사실조회 회신이 주한 중국대사간이 중국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 요청


## $\square$ 항소심 1회 기임(2013. 10. 2.)

○ 검사

- 원심의 무죄 이유를 반박하면서, 핵심 중인 유가려의 일부 법정진술의 모순점올 이유로 유가려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올 인정하지 않는 것은 채중법칙을 위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항소이유 요지 진술
- 차회 기일에 피고인의 백한-중국 출입국기록올 확보하여 중거로 제츨 하겠다고 입중계쵝 진습

○ 변호인

-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여권법위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항소이유 요지 진슬

망ㅇ소심 2혀 기일(2013. 11. 1.)
O 검사

- 화붕시 공아ㄴㅜㅜㄱㅇㅣ 발급하 피고인의 북한중국 츨입경기룍을 증거로 제츨
* 위 입겸기톡은 2013. 10. 중순경 이 사건 수사이 관여한 국졍원 수사굔이 중국 밥조자을 콩해 일수하연다면서 경사에게 교부 (화퐁시 곻안국 출입국균리가 관인과 화롱시 공중처의 도장이 찍혀있음)
$\Rightarrow$ 겸사는 중국 공안국이 공식젹으로 빤급해주지는 못하지안 비공식적으로 임국 담덩 직원이 밭급해 준 것으로 이해

O 변호인

-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울 부동의하고, 특히 검찰의 츨임경 기록 입수 경위를 문져 삼으면서 외법수집증거라고 조장

O 재판부

-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고, 다만 검사에게 변호인이 문제 삼는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에 대해 차회 기일에 소명할 것을 요구


## ㅁ 항소심 3회 기임(2013. 12. 6.)

O 검사

-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경위 관련, 검찰은 1 심어서부터 외그 경로 (데검-외그부-심양 주져 한국영사관)를 룽헤 피고인의 츨입경기륨의 발급올 요쳥해 왔고, 이에 화롱시 공안국이 국가간 정보협려 차워 어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발급올 지원히 준 것이며,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 진술
- 화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것이라는 점울 명확히 하기 위해 건찰이 제츨하 츰입경기록을 화롱시 공안국이 반급혀 준 사실이 있다는 사실화인서 공문 회신올 추가로 제츨
* 경사는 국정원으로부터 출임경기특율 교부받은 후, 급치령기 반릅 진워



O 변호인

- 변호인은 피고인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발급 피고인의 백한중국 출입경기룽율 중거로 제출
- 또한 화롱시 공안국 직원의 진슬이 누화된 동영상(화릉시 공안쿡에서 피교인의 줄입경기륵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엾다는 내용)과 삼합변방겸사참 발행 상황설명서(겸사가 미출한 흥임경기뽁은 출입졍 시스템 엄그레이드 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없던 졸입경기륵 생성되였다는 내용)를 추가 제출

ㅁ 항소심 4혀 기임(2013. 12. 20.)
O 검사

- 검사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은, 검찰이 외교 경로를 롱해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화룽시 공안국이 발급헤 준 자료라는 점을 다시 강조
- 변호인이 제출한 $\triangle$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 발급 출입경기록은 그 내용이 부정확하고, $\triangle$ 화룡시 공안국 직원의 진술이 녹화된 동영상과 삼합변방검사참 발향 상항설명서는 모두 출입경기록 발급 둥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진술되거나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문 제기

O 변호인

-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중국 정부에 겸사가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

O 재판부

- 변호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고, 사실조회 회신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출입경기룍올 들러싼 논쟁올 중단할 것올 고지
- 사실조회 회신 도착 후, 검사 제츨 츱입경기륙의 중거능력 유부에 대한 최종젹으로 결정하겠다고 고지



O 2013. 6. 20.(1심 재판 계속 중)

- 검사는 대검찰청을 통하여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경유하여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올 발송
$\Rightarrow$ 2013. 6. 20.자 대겁 명의 피교인의 츨입경기륵 요졍 공운 사븐(챵부 1)
○ 2013. 7. 1. ~ 7. 8.
- 대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은 길림성 공안청에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의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올 발송
$\Rightarrow$ 2013. 7. 1.자 및 7. 8.자 심양 주제 한격영사균 밥송 공문 사븐(영부 2)
○ 2013. 7. 중순경 ~ 9 .
- 츌입경기록 발급 전례가 없고, 자국민 보호(피고인은 중국 국적자)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츨입경기록 발급에 쳡조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올 국정원 수사관을 룽하여 건달 받음

○ 2013. 9,만경

- 1 심 무죄가 선고(8.22.)된 후, 국정원 수사간으로부터 중국 협조자를 롱하여 중국 공안국의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롱을 비공식적 입수가 가능할 것 같고, 현재 노력 중이라는 입장율 전달받음

O 2013.10.2.(항소심 1회)

- 검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의 핵심 중거인 피고인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을 차회 기일까지 확보하여 제출하겼다고 입중계획 진슐

○ 2013. 10. 중순경

-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중국 협조자를 통해 화롱시 공안국이 발급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2 부를 입수하였다면서 검사에게 제츨
 이에 더해 화퐁시 굥중처 도장까지 픽힌 줄인경기륵(궘부 4)
O 2013. 10. 24.
-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출입경기록은 화룽시 공안국의 공문율 롱해 회신받은 것이 아니어서 추후 증거능력 및 중명력 입중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 대두
- 이에 검사는 대검을 봉해 중국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율 경유하여 화롱시 공안국에 사실조희 요청 공문 발송
$\Rightarrow$ 2013. 10. 24.제 매겸 명의 서심조희 요영 굥문 사본(겹부 5)
* 겅사는 국졍원 수사균으로부터 '검잔에서 시싱조희 요줭 굥문을 보내면 화롱시 굥안국 명의로 사실조희 공운 회신이 가흥하다 는 사실욜 햑이ㅇㅏㅏ 푸 공문 발송

O 2013. 11. 1.(항소심 2회)

- 화통시 공안국 발급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욜 중거로 제츨

○ 2013.11. 27.
- 화통시 공안국으로부터 화풍시 공안국은 검찰의 사실조회 공문에 첨부된 츨입경기룩율 받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 수신 $\Rightarrow$ 화룽시 공앙국 형의 사빙조혜서 사븐(경부 6)
- 2013. 12. 6.(항소심 3회)
- 검사는 위 화롱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제판부에 게출
$\Rightarrow$ 화룽시 굥안국 영의 사설조회서 사블(참부 6)
- 변호인은 $\triangle$ 연변조선조ㅈㅏㅏ치주 공안국이 발굽하 피고인의 출임경기토 -화룡시 공안국 직원으로 초정되는 자의 진술이 노화되 동영상 4 삼합변방검사참이 발형하 정항설명서를 중거로 제출
 경사장 발행 정형널영서 사본(경부 8)
* $\triangle$ 변호인이 지출한 촐입경기특은 검사가 제졸한 출입경기측과 내용 상이하고, $\triangle$ 둥영상은 화륭시 공안국에서 피고인의 출입경기폭을 발급해준 시실이 앖마는 내융이며, $\triangle$ 정황쳘명서는 검사가 제출한 출임경기록은 중임경 시스팀 업그리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엾던 출입경기록이 생성되었다는 내욤2013. 12. 20.(항소심 4희)
- 검사는 위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자료로서, 삼합 변방검사참이 공식 발행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제츨
$\Rightarrow$ 상항변밤검사장 발행 유가강의 촐입경기륵 <정향녕명>에 균한 답변 사븐(경부 9)
* 답변서 내용은, 변호인이 젳⿱ㄹㄹ한 정황설영서는 변방검사장에서 빤근암 수 있는 쾬한 범위 까의 내용이고, 촣입경 과정에서 '추'' 과 '입' 의 ㄹㄹ동으로 질몿 입력되었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Rightarrow$ 재판부 체택)
* 공판 중료 루. 경사도 중국 정부롤 성대로 변호인이 제출합 피고인의 술임경


